제1차

이사회 회의록

< 2009. 5. 20(수) >

한국장학재단

2009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① **회의일시** : 2009년 5월 20일(수) 10:30 ~ 13:30

② **회의장소** : 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(4층)

③ **출석임원** : 8명

- 이사장 이경숙
- 이 사 김규옥(당연직), 최수태(당연직. 代.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), 김명환, 문태현, 이현봉, 정해룡, 천세영

④ **불참임원** : 3명

- 이 사 김춘선, 김광수, 홍규덕

⑤ **상정안건**

□ **의결안건(6건)**

- 제1-1호 이사회운영규정 제정(안)
- 제1-2호 직제규정 제정(안)
- 제1-3호 내규관리규정 제정(안)
- 제1-4호 취업규칙 제정(안)
- 제1-5호 인사규정 제정(안)
- 제1-6호 2009년도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계획(안)

⑥ **소관부서** : 전략기획실

2. 논의 결과(요지)

1 의결의안 제1-1호 : 이사회운영규정 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・제3조(회의 종류) :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

- 정기이사회 : 매년 6월과 12월 개최(연2회)
- 임시이사회 : 이사장 필요시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는 경우

・제4조(부의 절차)

- 회의 7일전 통지. 단,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생략 가능

・제8조(수당)

- 회의참석 비상근 임원에게는 실비 상당의 수당 및 교통비 지급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부칙에서 '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'를 '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'로 수정이 필요함

③ 논의 결론

부칙을 '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'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 의결

2 의결의안 제1-2호 : 직제규정 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・제5조(기구) : 총10개부서 설치(大部制 도입, 슬림화)

- 전략기획실, 경영관리부, 학자금여신부, 학자금관리부, 장학사업부, 기금조성부, 재무관리부, IT지원부, 장학상담센터, 감사실
- 전략기획실, 경영관리부, 장학상담센터는 이사장 직속
- 감사실은 감사 직속

・제17조(직원 및 정원)

- 종합직원 : 1급 내지 5급
- 정원 : 임원 3명, 종합직원 107명(총110명)

・제18조(부서장)
- 부서에는 부장, 실장, 센터장을 둠
- 부서장은 2급 이상 종합직원으로 보임. 단, 예외운용 가능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제2차 이사회에서 직제표 삽입과 리스크 관리 부서를 만들어 재상정 요청

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서 다음 주 이사회에서 재상정 진행 요청

③ 논의 결론

직제규정(안)을 수정 후 제2차 이사회 재상정하기로 의결

3 의결의안 제1-3호 : 내규관리규정 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・제2조(정의) : '내규'를 규정과 세칙으로 구분
- 규정 :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조직과 직원의 권리, 의무 및 업무의 관리,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정함
- 세칙 :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운영기준, 절차 등을 정함

・제7조(효력)
- 법령,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상실
- 내규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규정은 그 외의 규정보다, 규정은 세칙보다 효력이 우선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부칙의 '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'를 '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'로 수정 필요

③ 논의 결론

부칙을 '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'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

4 의결의안 제1-4호 : 취업규칙 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・법규준수 의무, 친절공정의무, 청렴의무 등 일반적 준수사항
・근무시간 : 09:00 ~ 18:00(휴게시간 : 정오를 전후로 1시간)
・유급휴일
  -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
  - 근로자의 날, 토요일 등
・휴가 및 휴직, 채용 및 신원보증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함
・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복지규정으로 정함
・여비, 퇴직금, 그 밖의 근무조건은 보수 및 퇴직금규정으로 정함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제17조(부하직원의 지도·단속·육성의무)의 '감독책임이 있는 직원은 항상 부하직원의 동향을 관찰하여 그 행실이...'를 '감독책임이 있는 직원은 그 행실이...'로 수정하고 제23(근무시간)조의 '...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...'를 '...다만 재단은 필요할 경우...'로 문구를 수정

③ 논의 결론

자구 수정 의결

5 의결의안 제1-5호 : 인사규정 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・임용 : 채용, 배치 및 이동, 승격, 대기발령 등 모든 임용사항은 이사장이 결정

- 인사위원회 : 상임이사, 전략기획실장, 경영관리부장과 이사장이 위촉하는 2인 포함 5인 이내로 구성

・정년퇴직 : 만 60세

・포상 및 징계 : 일반포상/특별포상, 파면/해임/정직/감봉/견책

・특례조치 : 전직 직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근속기간, 연차휴가에 대해 특례조치로 정함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제58조(청원휴가) 제3항의 '사.탈상, 아.결혼기념일, 자.사회봉사'를 삭제 필요

③ 논의 결론

제58조(청원휴가)를 수정 의결

⑥ 의결의안 제1-6호 : 2009년도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계획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・목적 : 20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

・채권발행근거 :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18조

・채권발행기관 : 한국장학재단

・채권발행한도 : 1조 3천억원

・채권발행시기 : 2009년 6월 ~ 9월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채권발행계획(안) 관련 자료를 좀 더 보완하여 다음 이사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준비 바람

③ 논의 결론

2009년도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계획(안)을 수정·보완 후 제2차 이사회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결. 폐회.